

구미 IC광신프로그램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937-6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2층, 지상29층 7개동 총 581세대 중 일반분양분 265세대
- 입주예정일 : 2022년 12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공급 대상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89.5713	89A	89.5713	28.0422	117.6135	41.6990	159.3125	6
	84.9305	84A	84.9305	27.8330	112.7635	39.5386	152.3021	108
	100.1305	100A	100.1305	31.5536	131.6841	46.6148	178.2989	22
	84.9825	84B	84.9825	26.8935	111.8760	39.5628	151.4388	45
	84.9830	84C	84.9830	28.0857	113.0687	39.5630	152.6318	25
	98.5569	98A	98.5569	31.3518	129.9087	45.8822	175.7909	21
	114.9569	114A	114.9569	35.3662	150.3231	53.5171	203.8401	12
	108.6418	108A	108.6418	34.8001	143.4419	50.5771	194.0190	26
공급세대 합계								265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 이하 민영주택 10%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

구분	84A		84B		84C		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등	3	1	1	1	1		5	2
장애인	3	1	1	1	1		5	2
중소기업 근로자	2	1	1				3	1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1				3	1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정 계획(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주모집공고일	2020. 12. 30(수) (예정)	당사 홈페이지 청약홈 홈페이지
건본주택 개관일	2020. 12. 30(수) (예정)	구미시 아은로 551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1. 01. 11(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1. 01. 19(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 분	내용
1회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p>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p> <p>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p> <p>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p> <p>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p> <p>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p> <p>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p>

구분	내용																	
청약 자격 요건	<p>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제외)</p> <p>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 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45 622 1449 712"> <thead> <tr> <th>구분</th> <th>대구광역시</th> <th>경상북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구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신청 자격	<p>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p> <p>※ 추천기관</p> <table border="1" data-bbox="245 920 1449 1272"> <thead> <tr> <th>구분</th> <th>관련법규</th> <th>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 등</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td> <td rowspan="2">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td> </tr> <tr> <td>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td> </tr> <tr> <td>중소기업 근로자</td> <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td> <td>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과</td> </tr> <tr> <td>장기복무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d>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 <td>구미시청장애인 복지과</td> </tr> </tbody> </table>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과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구미시청장애인 복지과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과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구미시청장애인 복지과																
당첨자 선정 방법	<p>- 해당기관 추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추천 바람.</p> <p>-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p> <p>-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p>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신청하여야 합니다.</p> <p>[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p> <p>-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예비입주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 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등 유형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배정량의 40% 선정</p>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예비입주자 포함) 및 동·호수 배정은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수행)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 •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하여야 함(서류제출 없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10:00~14:00)에서 신청 가능(자격증명 및 구비서류 제출) •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 • 예비입주자 추천 여부는 기관이 결정하고 예비입주자 추천 시 별도 순위는 부여하지 않음.(타 유형 특별 공급 미달 시 예비입주자가 당첨될 수도 있음) •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하여야 당첨자로 확정. • 기관추천 대상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대는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기관추천 예비입주자 포함)에게 공급 •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배정 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포기하고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택 불가 - 다만,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 예비순위 지위 인정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0.12.30.(수)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및 인쇄제작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관에서는 해당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 명단을 2020. 12. 31.(목) 오전 12시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모델하우스 주소 : 구미시 야은로 551
- 분양 상담 문의 : **054-461-1020**
- 상담문의는 꼭 모델하우스 대표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사업지 및 견본주택 위치도



